

# 예산총칙

2018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83,419,121	29,502,574
일반회계	869,497,103	26,084,913
특별회계	113,922,018	3,417,661
공기업특별회계	94,318,279	2,829,54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1,950,115	958,50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1,740,895	1,552,227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0,627,269	318,818
기타특별회계	19,603,739	588,112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8,392	852
강릉시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745,820	52,375
강릉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2,805,040	84,151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618,513	78,555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369,393	71,082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4,777,828	143,335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5,258,753	157,763

제 2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8년도 명시(계속비)이월 사업조서는 별첨 "명시(계속비)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2018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2018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5,477,434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18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9,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비목 및 채무상환원리금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한다.

제 9 조 (간주처리)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